

#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7,517,177	15,225,515
일반회계	472,992,339	14,189,770
특별회계	34,524,838	1,035,745
공기업특별회계	6,866,324	205,990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6,866,324	205,990
기타특별회계	27,658,514	829,75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06,258	24,188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650,774	199,523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150,066	34,50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720,064	21,602
수질개선 특별회계	9,124,312	273,729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6,736,962	202,109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470,078	74,10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924,82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